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9. 9.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해 지역 균형성장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감면을 확대하며,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균형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차등 감면 적용

- 1)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33조의3)
- 2)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안 제58조)
-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안 제79

조의2)

- 4)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
(안 제80조의2)

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세 특례 재설계

- 1)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상향(안 제47조의2)
-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47조의5)
- 3) 친환경선박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 형태 재설계(안 제64조)

다. 공동체 가치 제고 및 사회적 배려 강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연장

-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어선 등에 대
한 감면 연장(안 제6조, 제9조)
- 2)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 3)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29조)
-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설계(안 제36조의3)
- 5) 전세사기피해자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36조의4)

라. 사회연대경제기업 전반에 대한 감면 신설

1)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협, 수협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3, 제62조의4)

2)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5)

3)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6)

마. 과세 합리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 기준 개선 등

1)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완화(안 제31조)

2)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36조의3, 제73조)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 명확화(안 제58조의3)

4) 고급주택 등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안 제17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과세”를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로, “현저하게 침해하거나”를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관한 과세정책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어업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의2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없는다”를 “없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5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15

제31조의5제2항 중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여”를 “건축하여”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주택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15

제3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6(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한 감면)

「건축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임대(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통하여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숙사 및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

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33조의3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4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33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 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생애최초 주택등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 취득일”을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 취득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택등”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를 “주택등을 유상거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를 “주택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또는 같은조같은항제8호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주택”을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40세 미만인 자가 취득하는 주택등

제36조의3제1항제2호 중 “주택”을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에”를 “주택등에”로 한다.

제3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의”를 “주택등의”로, “모두”를 “감면대상 주택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으로서”를 “주택등으로서”로,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 소재지역에”를 “주택등 소재지역에”로, “시·군 이외”를 “시·군·구(통합특별시 내 구로 한정한다) 이외”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 취득일부터”를 “주택등 취득일부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을 각각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로 한다)인 주택등(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감면대상 주택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로 한다)인 주택등(아파트는 제외한다)을 둘 이상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및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0조의3제3호 중 “50을,”을 “25를,”로,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을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50을,”을 “25를,”로,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을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1항”으로,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15부터 100분의 20까

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를 “포함하되,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로, “2026년 12월 31일”을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을 2026년 12월 31일”을 “20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스등급 및 1등급부터 2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30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건축물: 100분의 20

제47조의5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50을,”을 “25를,”로,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을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4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취득세 및”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58조제2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으로, “취득하는”을 “수도권 외 지

역에서 취득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을 “남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용재산”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자산총액(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직전 사업연도의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3조의23 또는 제103조의24에 따라 신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같다]이 2억원 이하인 법인[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일(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을 포함한다] : 100분의 100(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85)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100분의 85(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7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가. 개인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을 포함한다) : 100분의 85(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70)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100분의 70(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마을기업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에 따라 자활기업의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2조의4(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이 경우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②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③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2호부터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을 포함하며,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제62조의5(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

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2조의6(협동조합 등의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적용 특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등”이라 한다)로서 조합원(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을 말한다) 수가 200인 미만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미만인 협동조합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2) 및 나목2)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백원일 때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을 “다음”으로,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를 “경감율을 적용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천분의 20”을 “100분의 10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천분의 15”를 “100분의 75”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천분의 1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6조제4항 중 “자동차”를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이 완료된 이후 고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140만원 이하”를 “70만원 이하”로, “140만원

을 초과”를 “70만원을 초과”로, “140만원”을 “70만원”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을 “같은 법 제6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7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른 협의 후 현금 지급을 통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경감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10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75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50

⑦ 제6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

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종(”를 “업종[”로, “세분류”를 “중분류(다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같다)”를 “같다]”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청산·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조건으로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한한다)”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장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공장”을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을 “지상건축물,”로 한다.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양도하는”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으로 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6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7(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제1항에 따라 매입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0분의10(같은 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제2항에 따라 매입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10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같은 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

다.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을 “부동산등(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7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8항, 제33조의3제1항, 제36조의4제1항·제4항·제5항, 제41조제8항, 제42조제3항, 제44조제3항, 제47조의5제1항, 제57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4, 제58조의3제2항, 제80조의2제1항·제2항,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 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추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의3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생애최초 주택등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문화예술·체육진흥 공공기관 부동산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의 제58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부동산 취득 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8조의3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및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2조의4, 제62조의5, 제6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0000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특례) 2027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의3, 제22조의4,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62조의3제1항 및 제6

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의5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5년간 제62조의3, 제62조의4 및 제62조의5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경감한다.

제20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추징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13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9조의2제3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 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감면 제외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이 법 시행 이후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7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u>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u>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u> <u>현저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관한 과세정책 등 ---</u>
③ ~ ⑧ (생략)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2. (생략)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illegible]

_____.

_____.

1. · 2. (현행과 같음)

②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경감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	----- <u>2029년 12월 31일</u>-----.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u>2029년 12월 31일</u>-----. ② ----- ----- ----- <u>2029년 12월 31일</u>-----.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생 략)
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3. (생략)
- ② · ③ (생략)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
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
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2. (생략)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④ (생략)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
라 한다)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 2029년 12월 31일 -----

1. · 2. (현행과 같음)

② -----

2029년 12월 3
1일-----.

③・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u>2026년 12월 31일</u>까지 경감한다.	----- ----- ----- ----- ----- <u>2029년 12월 31일</u>-----.
1. 2. (생략) ② ③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u>2026년 12월 31일</u>까지 면제한다.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 ----- ----- ----- ----- ----- ----- <u>2029년 12월 31일</u>-----.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①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u>2026년 12월 31일</u>까지 감면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① ----- ----- ----- ----- ----- ----- <u>2029년 12월 31일</u>-----.

1. · 2. (생략)

② (생략)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 4. (생략)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

----- 2029년 12월 31일-----.

1. ~ 4. (현행과 같음)

② -----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 ⑤ (생략)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말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2. (생략)

③ ~ ⑦ (생략)

⑧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하 이 항에서 “지분적립형주택”이라 한다)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

----- 2029
년 12월 31일-----

-----.

-----.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인 주택등을 건축하여 공공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월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15

② -----

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신 설>

----- 건축하여 -----
----- 주택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
-----.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등: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등: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
등: 100분의 15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의6(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
한 감면) 「건축법」에 따른 제
1종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거주하거
나 임대(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통
하여 「주택법」 제2조제4호에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 3. (생략)

4.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②·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단서 신설>

따른 기숙사 및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

-- 2027년 12월 31일-----

-----.

1. ~ 3. (현행과 같음)

4. 2027년 12월 31일-----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2027년 12월 31일----- .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
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
으로 한정한다) 및 배우자(「가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
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등 구입
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
텔(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
라 한다) 취득일 -----
----- 주택등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주택등을 유상거래-----

A set of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five horizontal dashed lines. Two small black dots are placed on the lines: one on the second line from the top and one on the fourth line from the top.

1. -----
----- 주택등에 대해서는 「지
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
목 또는 같은조같은항제8호의

-----.

가. -----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
파트는 제외한다)

나.·다. (생략)

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신설>

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
0만원을 공제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총 감
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제외한다) 및 「주택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오
피스텔

나.·다. (현행과 같음)

라. -----
주택등

마. 40세 미만인 자가 취득하
는 주택등

2. ----- 주택등-----

-----.

② ----- 주택등
을 ----- 주택등
에 -----

-----.

③ ----- 주택등-----

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시·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

-----.

1. ----- 주택등의 -----

----- 감면대상 주택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

2. -----

----- 주택등으로서 -----

-- 주택등을 ----- 주택등 소재지역에 -----

-- 시·군·구(통합특별시 내 구로 한정한다) 이외--. -----
--- 주택등을 -----

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하
다.

가.·나. (생략)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
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
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
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
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
한 경우

5.·6. (생략)

<신설>

-- 주택등 취득일부터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주택등

3. -----
주택등-----
-----.
----- 주택등-----
-----.
-----.

4. -----

주택등-----

5.·6. (현행과 같음)

7.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
고 「지방세법」 제4조에 따
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로 한다)
인 주택등(아파트는 제외하
다)을 감면대상 주택등을 취
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
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40
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

④·⑤ (생략)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을 위한 감면) ① 「전세사기피
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
해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
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
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6
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
면한다.

1. 2. (생략)

<신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
액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4
억원 이하로 한다)인 주택등
(아파트는 제외한다)을 둘 이
상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을 위한 감면) ① -----

----- 2029
년 12월 31일-----
-----.

1.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
받은 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
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
해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생략)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 2029년 12월 31일 ---
-----.

⑤ -----

----- 2029년 12월 31일 -----
-----.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

1. (생 략) 2. 삭 제 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 (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u>50</u>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u>50</u>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 ⑦ (생 략) ⑧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방대학법인”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1. (현행과 같음) 3. ----- ----- ----- ----- ----- 25 를, ----- ----- ----- 25 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 -----.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 ----- ----- -----
--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1. -----

----- 2029년 12월 31일

2. -----
----- 2029년 12월 31일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
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
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
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
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④ (생략)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

③ 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
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
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
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2029년 12월 31일-----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④ ~ ⑥ (생략)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6. (생략)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

-- 2029년 12월 31일-----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 25를, -----

---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

1. ~ 6.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1항-----

----- 포함하되,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

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 설>

<신 설>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
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
득세의 100분의 10을 2026년 12
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 ⑥ (생 략)

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
전시설에 대한 감면) ① 환경친
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
는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 취득세
를 2029년 12월 31일---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
스등급 및 1등급부터 2등급까
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
의 30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건
축물: 100분의 20

③ -----

----- 20을 2029년 12
월 31일-----.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
전시설에 대한 감면) ① -----

를」 제11조의2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가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생략)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5. (생략)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

----- 2029년 12월 31일-----.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

----- 25를, -----

-----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

1. ~ 5.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한 가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 2029년 12월 31일-----.

④ -----

----- 2029년 12월 31일-----
-----.

-----.

⑤ -----

----- 2029년 12월 31일-----

-----.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목적
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벤
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의 100분
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
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100분
의 60)를 각각 2026년 12월 31
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
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
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
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
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
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

-----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그 부동산에 대한 재
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

-----.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② -----

--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세를-----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③ -----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

 -----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④ (생략)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 2. (생략)

②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② 2029년 12월 31일-----

하는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 2. (생략)

③ ~ ⑦ (생략)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남은

부동산

한다.

⑨ (생략)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

⑨ (현행과 같음)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2029년 12월 31일-----.

1의2. -----

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 (생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세

재산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시장 · 통합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
사 -----

경감한다.

1. ~ 3.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제62조의3(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
합,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
벤처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
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
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이 고
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
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
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

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
동산에 대한 감면율

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
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자산총액(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자산총
액”이라 한다)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의 과세표준[직전 사업연
도의 「지방세법」 제103
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3조의2
3 또는 제103조의24에 따
라 신고한 경우로 한정하
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
의4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직
전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을 적용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같다]이
2억원 이하인 법인[법 제5
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
일(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
4에서 “창업일”이라 한다)

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
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을 포
함한다] : 100분의 100(다
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
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8
5)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
하는 법인 : 100분의 85(다
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
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7
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
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가. 개인 또는 자산총액이 5
천억원 미만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
억원 이하인 법인(창업일
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
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을 포
함한다) : 100분의 85(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

한 경우에는 100분의 70)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
하는 법인 : 100분의 70(다
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
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
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
112조에 따라 사회적협동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
는 경우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마을기업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18조의4에 따라 자
활기업의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 제82조에 따라 소비
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
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
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
3호에 따른 연합회 및 전국연합
회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

<신 설>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2조의4(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 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

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이 경우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

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

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②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같은 법 제39조제1

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

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

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

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③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2호부터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

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
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
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
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포함하며, 연
합회 및 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
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
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
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
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
까지 경감 한다.

<신 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
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
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
산의 경우 : 100분의 100)
 -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
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
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 제62조의5(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
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
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
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
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
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

합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

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2조의6(협동조합 등의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적용 특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

<신 설>

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등”이라 한다)로서 조합원(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을 말한다) 수가 200인 미만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미만인 협동조합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 2) 및 나목2)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백원일 때에는 2029년 12월 31일 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선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선박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경우: 1천분의 20
2.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2등급인 경우: 1천분의 15
3.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인 경우: 1천분의 10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략)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 다음 -----

----- 경감율을 적용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 -----

1. -----
----- 100분의 100
2. -----
----- 100분의 75
3. -----
----- 100분의 50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이 완료된 이후 고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한다.

⑤ · ⑥ (생략)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 2029년 12월 31일--- 70만
원 이하----- 70만원
을 초과-----
 -- 70만원-----.

⑤ · ⑥ (현행과 같음)

[illegible]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
 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
 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
 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
 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
 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
 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
 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
 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
 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
 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 같은 법 제63조제
7항 및 제8항-----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나. (생략)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

[illegible]

1. -----

가. -----
----- 특별시 · 통합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
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나. (현행과 같음)

다. -----
----- 특별시 · 통합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
치시 · 도 · 특별자치도와

특별시 · 통합특별시 · 광
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하
다.

2. (생략)

②·③ (생략)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삭제

③ ~ ⑤ (생략)

<신설>

<신설>

특별자치도 내---. -----

-.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
호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73조에 따른 협의 후
현금 지급을 통해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경감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 100분의 10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 100분의 75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
산: 100분의 50

⑦ 제6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감면)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제3호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감면) ① -----

----- 업종-----
중-----

----- 중분류
(다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같다]--- 2029년 12월 31일---

한다.

1.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할 것

2.·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2. (생략)

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4.·5. (생략)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삭 제>

1.·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1.·2. (현행과 같음)

3. -----

-----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조건으로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한한다)

4.·5. (현행과 같음)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나. (생략)

2. (생략)

- ② 수도권(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

-----.

1. -----
----- 2029년 12월 31일-----

-----.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② -----

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illegible][illegible]

가. 공장을 신설·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가. 산업용 건축물등-----

나.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illegible]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 ④ (생략)

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임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203
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 설>

----- 203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

제167조의7(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제1항에 따라 매입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0분의10(같은 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제2항에 따라 매입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

구하고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10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같은 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 제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

----- 부동산등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 ----- ----- ----- 초 과하는 ----- ----- ----- -----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제1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 ----- 2029년 12월 3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853